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u>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u> 문의가능 전화번호 :02-2004-8963/0991

1.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다. 보관 •관리기간: 2012.02.17 - 2012.12.31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마. 두자메메립자, 두자중개립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SK증권, 동부증권, 케이비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골드만삭스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리딩투자증권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단경로자	100NH	변경전	변경후
2012.06.01	수)	② 생 략 ③ 1. 운용보 수율: 연 1,000 7.5 2. 지보수 원 분 1,000 1.0 3. 율보 수 연분 1,000 1.0 4 1,000 1,000 1,000	① 생 략 ③ 한다. 1. : 연 1,000 분 7.0 2. 지보수율: 의 지수율: 1,000분 0.5 3. : 의 산무보 수 일반 사무 수 일반 분의 0.2 4. 일반 분의 0.2

	E TI	11.111/0053	11.111/085737
2012. 12. 17	명칭	레버리지증 권상장지수 투자신탁 [주식-파생 재간접 형]	
2012.12.17	(모)	③신자을채투및련품산되KK수지는자주하으험목투산10하상자히자주KK가기하투및KK수자하상익여신익되이KK가이으탁 , 증주파에하 20기 합에투상 외로탁분초파 . 이으탁 , 증주파에하 20기 합에투상 외로탁분초파 . 이으탁 , 증주파에하 약기 합에투상 외로탁분초파 . 이으 12수지 중 22 이 이의 있었을 보고 있는 이 이의 및 120을 12수지 중 23 이 이의 및 120을 12수지 중 25 이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25 이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12 이 이의 및 12수이를 자투 12수지 중 12 이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12 이의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13 이의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13 이의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12 이의 의로 12수지 중 12 이의 이의 및 12수이를 자꾸는 12수지 중 12 이의 의로 12수지 중 12수지 12수지 중 12수지 12수지 중 12	지주성로상위목자100가 이유 KOSPI200구주는 의투의초생자, 가종 품험적신분10 등 부신주가 지자 부인회으탁110 등 자주성 지자 부인회으탁110 등 자주성 지자 하신의 특인회으탁110 등 자주성 지자 하신의 목자주성 지자 등 1200초는 이외자의 의자이 있주성 지자 기하에 일간 이외장이 KOSPI 200차 이 일간 이외장이 KOSPI 200차 이 일간 이외장이 KOSPI 200차 이 일간 지목 KOSPI 200차 기본

	하느	지	하	우요	3	ĤͰĿ	H 으
	투및100수자하상자초간양배종()(수함그법()()(가기하지자()())가연물선수등여다.	집권 이 이 에 여 수 동 影로 다 의 우 12 수 지 집 권 12 수 장 및 의 지 운 생용 주이를 수 상합 하는 내 합 선 통용 략	굿 첫 쟁 빠 기 헬 a 전 하 _ A A O 한 _ A P P I D I D III D I	KOS # ,	PI20 수 KN기	00주 구() SPI 를로 SP SP 등로 SP SP 등로 SP 등로 SP 등로 SP 등로 SP 등로 SP SP S	가 성종 200
2012.12.17	탁기자최로년한만약에신간터약	회 의성 연락 설터 오 . 신해 퇴계 기의 화조신 해로 기계	계투 일내 다계시자기부계지	의은의일 1 다. 1 이 회다에 하약 는 회일 계	회계 투지조 로부 1년 간 1년 경 도 1년 기 1년 기 1년 기 1년 기 1년 기 1년 기 1년 기 1년 기	기진 기진 전 기진 전 기진 전 전	한 학제표 ^한 교육에 우리 보면 면 된 학원학 다

			רו
			다.
			1. 2012 년 2 월 16 일 경과 후의 최초회 계기간: 2012 년 2 월 17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 지
			2. 제 1 호의 회계기간 경 과후의 회계 기간: 2013 년 1월 1일부터 매 1 년간
2012. 12. 17		막산 각자 투로 . 략 제 의탁발의법 . 규합자신 다 및 의다생 에 신 수 1. 집 11하업행증제항정	①집합투자업 자는 투자신 탁자산을 투자신 탁재산을의 투 음. 대상 으로 . 생 의 및 로 . 주 생 제 110 의 자가 보이 된 에 대한 건 이 한 건 이 한 건 이 이 한 건 이 이 한 건 이 이 하 준다 가 준다 가 준다 가 준다 가 준다 가 준다 가 준다
2012. 12. 17	제 35 조 (투자한 도)	① 합투자 업자는 의 구 34 조의 의하 여 투자상함 마서 바 무 용어 이에는 라 용어 악장하 따라 용 이 바 우 이 함 하 바 무 지 장 본 이 자 무 이 자 는 이 이 무 이 가 는 이 이 무 이 의 투 에 의	①집합투자업 자는 제34조 의 규정에 의 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있어 다음 정하는 투자 에 따라 투자 나 인용한다. 1. 주는 자산홍 액의 이상으로 한다. 집합투자 2. 집합투자

	제36조 (운용 제 한)	10호 다 2.의투자10이다 3. ** ** ** ** ** ** ** ** ** ** ** ** **	증자박의 100로 한 지하는 100로 한 부자신은 어에행 회사 8 제 입는 재함음당를에 수 마이 10 명 한 생 보는 박지 없 법 투자을 있으는 탁지 없 법 무용 다해 위사 할다
	제36조	도성 예금 증서 제외) 은 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100 분 의 50 을 초 과하여야 한다.	①진하트 자 언
2012. 12. 17	(운용 제	업자을에음해행탁게수다및서으한는지며호된자신운있각하를 사시다 법例외인우러니음관령자신문 있각하를 사시다 법에적정에하하각면 법이 전용이는 수에할 령에적정에하하각면 및	자는 투자신 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수탁 회 사에게 지시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업자	
(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	
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운용하	
는 집합투	
고 그 · 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	
구를 포함	
· 글 ㅗㅁ 한다. 이하	
같다)의 집	
ᇀ더/크 립 합투자증권	
입무자당권 에 투자하	
에 구자하 는 행위와	
는 행위와 이 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100분	
의 20 을 초	
과하여 같	
은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	
우에는 각	
목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	
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외국 집	
합투자기구	
의 경우에	
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	
한 것만 해	
당한다)의	
8년대/크 집합투자재	
ᆸᆸᅮᄭ세 산을 외화	
4 1	

				1	1		
	자산으로					경우에는	총수의 100분
	100 분의 90					법제 279 조	의 20을 초과
	이상운용하					제 1 항에	하여 투자하
	는 경우에					따라 등록	는 행위. 이
	그 집합투						경우 그 비율
	고 그 · 자기구의						의 계산은 투
	집합투자증					-	자하는 날을
	권에 투자						기준으로 한
	신탁 자산						
							다.
	총액의 100					집합투자업	
	분의 100 까						5. 수익증권
	지 투자하						을 판매하는
	는 경우					항의 외국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	또는 투자중
	나. 금융					자를 포함	개업자가 받
	위원회가					한다)에게	는 판매수수
	정하여 고						료 및 판매보
	시하는 상						수와 그 집합
	장지수집합					~~~	투자기구가
	투자기구						투자하는 다
	(상장지수						른 집합투자
	집합투자기					ニャチコ	기구의 집합
						(같은 집합	기구의 답답
	구와 비슷					트파어파기	누사능전날 판매하는 투
	한 것으로						
	서 외국 상						자매매업자
	장지수집합						(외국 투자매
		2. 이 투자신				구의 자산	매업자를 포
		탁재산으로				종액의 100	함한다) 또는
	이하 이 항	자산총액의					투자중개업자
	에서 같다)	100 분의 40				상을 외화	(외국 투자중
	의 집합투	을 초과하여				자산에 운	개업자를 포
	자증권(외	다른 집합투				용하는 경	함한다)가 받
	국 집합투	자증권에 투				우에 한한	는 판매수수
		자할 수 있는				다)에 자산	료 및 판매보
		집합투자기구				총액의 100	수의 합계가
		의 집합투자				분의 100 까	법 시행령 제
		증권에 투자				지 투자하	77 조제 4 항의
		하는 행위					한도를 초과
	한 집합투	01 671					하여 집합투
		0 110715					자여 법법부 자증권에 투
		3. 사모집합					자능전에 두 자하는 행위
		투자기구(사					사이드 워커
		모집합투자기				자산총액의	
	l	구에 상당하				100 문의 50	6. 이 투자신
		는 외국 사모				글 조과하	탁 자산총액
	산총액의	집합투자기구				여 같은 집	의 100 분의 30
	100 분의	를 포함한다)				합투자업자	을 초과하여
	100 까지 투	의 집합투자				(법 제 279	동잌종목의
		증권에 투자				조제 1 항의	증권
	_	하는 행위				외국 집합	투
		0.1				투자업자를	 자할 수 있
	다 간으	A 기타지 등!					자들 구 ᆻ 다.
	니· 트匸 지하트TI어	4. 각 집합				이하 같다)	니. 기 새 랴
	집합투자업						가. 정 약 나. 지방채증
	자가 운용	집합투자재산					
	하는 집합	으로 같은 집					권,특수채증
	투자기구	합투자기구의				자기구(법	권국
	(외국 집합	집합투자증권				제 2/9 소세	가가 발행한
	투자기구의					I 망의 외국	채권,주택저
Dampiampp	- PUBLIC HSS FS SFI		•				

집합투자기 당채권유동화 구를 포함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한다. 이하 같다)의 집 공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 합투자증권 에 투자할 채권담보부채 때 같은 집 권 또는주택 합투자업자 저당증권, 주 가 운용하 택저당채권유 는 집합투 동화회사법에 자기구(법 의한 주택저 제 279 조제 당채권유동화 1 항의 외국|회사, 한국주 집합투자기 택금융공사법 구를 포함 에 의한 한국 한다)의 집 주택금융공사 합투자재산 또는 금융기 **을 둘 이상** 관이 지급 보 의 다른 집 증한 주택저 합투자업자 당증권에 투 (법 제 279 자신탁 자산 조제 1 항의 총액의 100분 외국 집합 의 30 까지 투 투자업자를 자하는 경우 포함한다) 에게 위탁 이하 생략 하여 운용 ② 제 35 조 하는 경우 에 그 집합 및 이 조 제 1 **투자기구의** 항의 규정에 집합투자증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권(같은 집 합투자업자 서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가 운용하 불가피하게 는 집합투 자기구의 제 35 조제 1 **자산총액의** 항제 6 호 내 100 분의 90 지 제 8 호. 이상을 외 이 조 제 1 항 화자산에 제 6 호 내지 운용하는 제 9 호의 규 정에 의한 투 경우만 해 당한다)에 자한도를 초 각 집합투 과하게 된 경 자기구 자 우에는 초과 산총액의 일부터 3월 100 분의 이내에 그 투 **100 까지 투** 자한도에 적 자하는 행 합하도록 하 위 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 이 투자신 이 불가능한 탁 자산총 증권은 매각 액의 100 분 이 가능한 시 의 20 을 초 기까지 이를 과하여 같 그 투자한도

자기구의 에 적합한 것 집합투자증 으로 본다. 권에 투자 할 때 상장 **지수집합투** 1.~5. 생략 자기구의 ③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 최초설정일부 터 1월간은 권이나 같 은 집합투 이 조 제 1 항 자업자가 제 6 호, 제 8 운용하는 호 및 제 9 호 집합투자기 의 규정을 적 |구(법 제 용하지 아니 279 조제 1 한다.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 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 합투자재산 을 둘 이상 의 다른 집 합투자업자 (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 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위탁 하여 운용 하는 경우 에 그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같은 집 합투자업자 가 운용하 는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 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에 각 집합투 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 하는 경우 3. 이 투 자신탁재산 으로 자산 총액의 100

은 집합투

		_		
분의 초과	40 을 하여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집합 증권에		권을 판매 하는 투자	
투자	할 수 집합		매매업자 (외국 투자	
투자	기구의		매매업자를	
	투자증 투자		포함한다) 또는 투자	
	행위		중개업자 (외국 투자	
4.	사모집		중개업자를	
	자기구 ^민 집합		포함한다) 가 받는 판	
투자	기구에		매수수료 및 판매보	
상당 외국	하는 사모		수의 합계	
	투자기 포함		가 법 시행 령 제 77 조	
한다)의 집		제 4 항의 한도를 초	
	자증권 ■자하		과하여 집	
는 jo	병위		합투자증권 에 투자하	
	각 집		는 행위	
	자기구 집합투			
자재	산으로		7. 이 투자 신탁 자산	
	집합 기구의		총액의 100	
	투자증 통수의		분의 30 을 초과하여	
100 ដ	분의 20 ^분 과하		동일종목의 증권	
여투	투자하			
는 형 이 경	행위. 형우 그		투자할 수 있다.	
	의 계 투자		가. 생 략 나. 지방채	
하는	날을		증권,특수 채증권	
기준. 한다			국	
	수익증		가가 발행 한 채권,주	
권을	판매		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하는 매매	투자 업자		법 또는 한	
	투자 업자가		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받는	판매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	
판매	료 및 보수와		보부채권 또는 주택	
그 & 자기:	입합투 구가		저당증권으	
투자	하는		로서 주택 저당채권유	
나른	집합		동화회사법	

	에 의한 채 사 의 당채회사 의 당채회 용 지한 대자 보 는 이 이 한 보지 보고	
	② 및제규불다에는인가제항내호 제호내호 에자초된는부이투적 3 5 조의도고향하로불게제 이항제 제 규한를게 어린다. 1 전구음서 사하피 35 6 제 이항제 제 규한를게 어릴 그도도 3 에한과 경초 1 대자합하다. 2 및제규불다에는인가제항내호제호내호에자초된는부이투적 3 등 1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 각이 가능 한 시기까 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2012.12.17	제38조(투 자신탁보 수)	용보수율: 연 1,000 분 의 7.0 2. 지정 참가회사보 수율: 연 1,000 분의 0.5 3. 신탁 보1,000 분의 0.2	③-1. 운용 보수율: 연
2012.12.17	자신탁재 산의 운용 비용등)	서 " 미라 용 " 투자 신탁재산과 관련된 각호 말 한다~4. 수 관련 5. 총 명 비 생 자연	②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 탁재산과 음 용 로인 다. 생 수업 말한다. 생 구성되 5. 로 수익 명 는 관련비용 회 관련비용
2012.12.17		-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

				_			
	해지)	음 각호의	투자업자는			해지하고자	인 경우. 다
		경우 이 투	금융위원회의			하는 경우	만, 존속하는
		자신탁의	승인을 얻어			집합투자업	동안 추가로
		신탁계약을	이 투자신탁			자는 신탁	설정(모집)할
		해지하여야	을 해지할 수				수 있는 투자
		한다.	있다. 다만,				신탁에 한함
			다음 각호의			"해지기준	_ 1911
			어느 하나에			일"이라	@ETI !! E! 8
			해당하는 경			글 어디 한다)로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
			우에는 금융			디니펠 신	투자업자는
			위원회의 승			에 당해 신	다음 각 호의
			인을 얻지 아			탁계약의	어느 하나에
			니하고 이 투				해당하는 경
			자신탁을 해			해지일자,	우에는 지체
		자신탁 수	지할 수 있으			상환금등의	없이 투자신
		익증권의	며, 이 경우			지급 방법	탁을 해지하
			집합투자업자			및 기타 해	여야 한다.
		지되는 경	는 그 해지사			지관련사항	이 경우 집합
		우. 이 경	실을 지체 없				투자업자는
			이 금융위원			장에 공시	그 해지사실
			회에 보고하			하고 제 48	을 지체 없이
		상장폐지일	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로부터 10				에 따라 공	보고하여야
			1. 수익자 전			고하여야	한다.
			원이 동의한			한다.	<u>-</u>
			경우				
			87				1. 신탁계약
		하여야 한					에서 정한 신
		다.	2. 투자신탁				탁계약기간의
			의 수익증권				종료
			전부에 대한				
		투자업자가	환매의 청구				2. 수익자총
		공익 또는	를 받아 신탁				회의 투자신
		수익자의	계약을 해지				탁 해지 결의
		이익보호를	하려는 경우				
		위하여 필					3. 투자신탁
		요하다고	3. 투자신탁				O. 구시선기 의 피흡수합
		판단하거나	이 최초로 설				
		기타 불가	정한 후 1년				병
		l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4. 투자신탁
			억원 미만인				의 등록 취소
			경우. 다만,				
			경우, 나만, 존속하는 동				5. 이 투자신
			안 추가로 설				탁 수익증권
		의 승인을	안 수가도 설 정(모집)할				의 상장이 폐
			성(모집)할 수 있는 투자				지되는 경우.
		투계약을					이 경우 집합
		해지하여야	신탁에 한함.				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
		한다.	4. 투자신탁				부터 10일 이
			이 최초로 설				내에 이 신탁
			정하고 1년이				계약을 해지
			지난 후 1 개				제작들 애시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월간 계속하				이어야 된다.
		규정에 의	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③제 1 항제 3
			그 년년 그 아 50 억원 미만				호 및 제 4 호
<u> </u>			Po - E - OI E	I			의 규정에 의

			자신하경자지일등법해을업넷등여나결하에여제의하신하경자탁지웰신해지금방해항래하의라야하시하경자지일등법해을업넷등여나결하에여제의하신하경자탁지웰신해지금방해항래하의라야하시하경자지일등법제을업뎃등여하여이을 자자하합는 이 하는 이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2012. 12. 17		1. 지급기 준일: 회계 기간말일의 익영업일	① ^략 기준기준 기급기준 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 료일이 아닌 경 일이 아닌 경 우 그 직전 영업일
2012. 12. 17	익자에 대	자운용인력 의 변경 ③제 2 항의	이하 생략 ①-1.투자운 용인력의 변 경이 있는 경 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

하다	자사	운용인력의
	—	
		운용경력(운
모고	!서를	용한 집합투
교투	하는	자기구의 명
경우	판매	칭, 집합투자
회시	또는	재산의 규모
		와 수익률을
1 : -	통하	그 말함)
		3 제 2 항의
·	. —	O .:
	전자우	규정에 의하
편의	방법	여 자산보관
으로	교부	• 관리보고서
하 0=	야 한	를 교부하는
다.		경우 판매회
		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
		편의 방법으
		로 교부하여
		야 한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 약 기 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경 의	회계 감사 인명	계 약 기 간	감 사 보 수	켜 하 하 회
안진회계 법인	1 년	660 만원	서면 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